중도금대출 자서 안내문

■ 중도금 대출 안내

구분	내용
대상	신규계약자 및 자납세대 中 대출신청 세대 [203동 한정]
일정	일정 확정 시 문자 및 우편 안내 예정
장소	정읍 상동 예다음2차 견본주택 [정읍시 정읍사로 568]
구비서류	구비서류 안내문 참조

※ 자납세대 中 다음회차부터 대출신청 예정세대는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[대표번호 : 063-533-0053]

■ 중도금 자납세대 안내

구분	1회차	2회차	3회차	4회차
납부일정	계약자별 상이	2026.06.25.	2027.08.25.	2028.02.25.
납부금액	각 회차별 분양가의 15%금액			
납부계좌	광주은행 / 1107-021-862911 / ㈜와이엠개발			

■ 유의사항

※ 중도금대출 미예약 방문 시 장시간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,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중도금대출 신청은 계약자 본인만 가능하며, 제3자 대리인 신청 절대 불가합니다. (공동명의자 모두 방문 필수)

※ 개인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(대출 불가 세대는 해당 일정에 자납하셔야 합니다.)

※ 대출신청에 따른 제반비용(출자금 및 인지세 등)은 계약자께서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.

※ 기타 대출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대출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금융기관	담당자	연락처
203동	정읍농협 중앙지점	김정휴 과장	063-530-3927

YEDAUM

중도금대출 구비서류 안내 – 정읍농협 중앙지점

<table>
<tr><td>대출대상</td><td>☐「정읍 상동 예다음2차」아파트 203동 수분양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자
– 계약금 10%이상 납부한 정당계약자
–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농협 대출 대상자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</td></tr>
<tr><td>대출한도</td><td>☐ 분양대금의 60% 이내(중도금 1~4회차, 단 HUG 보증서 발급 범위 이내)
※ 정부의 정책, 당행 주택자금대출 규정,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.</td></tr>
<tr><td>대출금리</td><td>☐ 기준금리+가산금리 – 대출신청 시 확정
※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: 매 1개월 후취
※ 중도금 대출 이자부담 : 중도금대출 이자 부담은 입주지정일 전일까지 사업주체(시행사)가 대납하고, 입주지정일부터 수분양자(계약자)가 은행에 직접 납부.
※ 대출실행일 기준금리에 따라 가산금리가 확정되며, 대출실행 후 6개월 주기로 대출금리가 변동됩니다.</td></tr>
<tr><td>대출기간</td><td>☐ ~ 2029년 5월 31일 이내 – 입주예정일 6개월 이내 /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원리금 납부관련 사업주체 문의</td></tr>
<tr><td>부대비용</td><td>☐ 수입인지대금 : 75,000원 (대출금 1억원 초과 기준 150,000원의 50% 본인 납부)
※ 납부 : 추후 대출취급 금융기관으로 이체 납부(승인절차 완료 후 입금절차 진행)
☐ 보증료 = 보증금액 × 보증료율 ×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/ 365
※ 보증료율 연 0.13% / (승인절차 완료 후 금액 안내 및 입금절차 진행)
※ 보증료 할인관련은 안내장 내「보증료 할인대상 및 준비서류(P.3)」참조
☐ 중도상환수수료 : 면제</td></tr>
<tr><td>구비서류
– 공동명의 계약자인 경우 각각 서류 필요(대리불가)</td><td>
① 분양(공급)계약서 원본
②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 단, 여권 및 모바일 신분증 불가
③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, 인감도장 – 인터넷발급분 사용불가
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본인 및 배우자) –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력 또는 The건강보험 어플에서 FAX 요청
⑤ 주민등록등본 – 주민등록번호 및 관계 모두 포함 /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
⑥ 주민등록초본(본인 및 세대원 전원) – 주소 변동사항 및 인적사항 변경 내용 등 포함 / 분리세대의 경우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
⑦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⑧ 국세납세(완납)증명서
⑨ (국세)납부내역증명(최근 3년분)
⑩ 지방세납세(완납)증명서 – 재산세, 주민세 등 미납 지방세목 납부 후 증명서 유효기간이 대출실행일 이후로 유효할 것
⑪ 소득증빙서류(아래 참고)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근로소득자</th><th>사업소득자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재직증명서 +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최근2개년)
☞ 단기재직자는 최근 3개월 급여명세표 등 추가제출
☞ 회사발급 서류는 직인 날인 필수</td><td>사업자등록증 + 소득금액증명원(최근2개년)
☞ 신규사업자로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</td></tr>
<tr><th>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</th><th>연금소득자</th><th>기타소득자(무소득자) / 사실증명원 + A,B,C 중 택1(순서대로)</th></tr>
<tr><td>위촉계약서 등 + 소득금액증명원 (최근2개년)
위촉계약서 등
+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최근2개년)</td><td>연금증서(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)
연금지급내역서(또는 통장거래내역확인서)</td><td>기타소득자는 국세청(홈택스)의 소득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“사실증명원” 반드시 제출(홈택스→민원증명→사실증명신청→사실증명발급) 또는 세무서 및 동사무소 방문 발급
A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☞ 건강보험 지역세대주만 인정
B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☞ 국민연금 납부자만 인정
C 최근 1년간 신용카드소득공제확인서(사용하시는 카드사에 요청)
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“직장피부양자”인 경우 사실증명원 생략 가능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유의사항</td><td>
☐ 중도금대출 기간 이내라도 대출신청인에게 연체정보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도금대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☐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이거나 당행의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, 부채,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☐ 정부정책, 금융시장 환경변화 및 고객의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자격, 대출한도,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☐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☐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☐ 이자납입 지연 시 대출이자율+연3%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, 최고 연18%의 연체이자가 발생됩니다.
☐ 중도금대출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.
☐ 향후 잔금대출 전환 시 DSR산정, DTI산정, 비거치 분할상환 등 규제가 적용되어 잔금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☐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※ 중도금대출 진행 시, 보증료납부 및 환출처리 관련하여 거래(사용) 중 인 지역 농·축협 통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통장개설이 필요하오니「NH 콕뱅크」가입 및「비대면 입출식통장」개설을 사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비대면 입출식통장 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영업점 방문하여 입출식통장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.(인근 지역농·축협 통장개설 가능/단, 입출식통장 개설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)
※ 기존 거래(사용) 중인「지역 농축협」입출식 통장이 있으면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</td></tr>
</table>

YEDAUM

◆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 보증보험료 할인대상 및 확인서류

구 분	내 용	구 비 서 류
사회배려계층 (40% 할인)	**[저소득가구]**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	○ 소득확인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 –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 모두 제출
	[다자녀가구] 보증신청인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	○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	[장애인가구]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 직계존비속이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	○ 장애인증명서 (장애인등록증 불가)
	[고령자가구]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속이 세대원 중 1인 이상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.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인 기준 1년 이상 거주 동거 65세 이상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	○ 주민등록등본
	[신혼부부]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,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(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)인 경우	○ 혼인관계증명서 (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 등) ○ 소득확인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 ○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 모두 제출
	[다문화가구]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	○ 외국인등록증 ○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(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소))
	[국가유공자가구]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(유족)확인원,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, 보훈보상대상자(유족)확인원, 5.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원,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확인원,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, 지원대상자(유족)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	○ 독립유공자(유족증) 사본 또는 확인원 ○ 국가유공자(유족증) 사본 또는 확인원 ○ 보훈보상대상자(유족증) 사본 또는 확인원 ○ 5·18민주유공자(유족증) 사본 또는 확인원 ○ 특수임무유공자(유족증) 사본 또는 확인원 ○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원 ○ 지원대상자(유족) 확인원
	[의사상자가구]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「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의사자 증서, 의사자 유족증, 의상자 증서,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	○ 의사자(유족증)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 ○ 의사자(유족증)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
사회배려계층 (60% 할인)	**[한부모가구]**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구 중인 경우	○ 한부모가족증명서
	[독거 고령자가구] 보증신청인이 배우자, 직계비속,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독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	○ 주민등록등본
모범 납세자	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자로써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료의 10%를 할인	○ 모범납세자 증명서(우대기간 이내, 1개월 내 발급분) – 산업훈장, 산업포상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기획재정부장관표창, 국세청장표창에 한함

대출 신청인 및 세대원이 위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보증료 할인 대상으로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원입니다.)

YEDAUM